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88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기관별 안전보건 관리 인력 보강, 시설 운영의 직영화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기록 관리 및 생태연구전문인력 확보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027명에서 19,056명으로 29명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인력 증원(5급이하 +20명)
 - 1) (본 청) 안전총괄실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 소방재난본부 +2

2)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3, 서북병원 등 +8

나. 서울로7017 및 서울숲 운영의 직영화 전환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5급이하 +8명)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

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멸종위기종 생태연구 전문
인력 증원(연구직 +2명)

1) 서울기록원 기록연구사 +1,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

▶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명: 임기제 장기결원과 상계조정

(일반직 5급이하 △1명)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안전 보건인력 보강, 민간위탁 사무의 직영화와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29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증원(5급 이하 +20명)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적용대상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달리해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정의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中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특정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中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 의무 |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 시민(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 | | |
|-------|--|---|
|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신체 안전을 위한 조치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 ·(시설물안전법) 도로시설, 옹벽, 하천, 상하수도,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실내공기질안전법) 다중이용시설 ·(도시철도법, 해운법) 도시철도차량, 여객선 |
| 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지자체 장, 지방공기업 장 등) 처벌 -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민사 손해배상 : 경영책임자(지자체장 등)와 기관이 손해액 5배 이하 배상책임 ※ 양벌규정 : 기관에서 (사망)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2개의 총괄 전담팀을 설치하고(5명 증원), 안전과 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충원하며 (10명 증원), 공사장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인력 보강(5명 증원)을 위해 총 20명을 증원할 계획임.
- 총괄전담팀은 노동정책담당관과 안전총괄과에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2명 증원)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3명 증원)이 각각 설치되어 중대재해 분야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총괄전담팀 증원 내역 >

- 노동정책담당관의 ‘노동안전팀’ →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재편(+2)
 - ▶ (순증 2) 행정7급 +1, 임기제 시설(건축) 7급 +1
 - ▶ (상계·재배치 5 별도) 행정5급 1, ㉠행정6급 1, ㉠공업(기계)7급 1, ㉠보건8급1, 행정6급 1
-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신설(+3)
 - ▶ (순증 3) 임기제 행정6급 +1, 시설(토목)6급 +1, 시설(건축)7급 +1
 - ▶ (상계·재배치 3 별도) 시설(건축)5급 △1 → 행정·시설5급 +1, 전산7급 △1 → 전산6급 +1, 행정7급 1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토록 하고 있어) 소방재난본부 등 5개 기관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10명을 증원함.
-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은 인력의 상계 및 재배치(기관별 2명, 총 6명)를 통해 증원 없이 자체 정원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보강함.

< 안전 및 보건 관리 인력 증원 내역 >

<순 증> : 5개 기관, +10명

- 소방재난본부(2) : 공업(기계)7급 +1, 보건7급 +1
- 서북병원(2) : 공업(기계)7급 +1, 간호·보건7급 +1
- 어린이병원(2) : 공업(기계)7급 +1, 간호·보건7급 +1
- 은평병원(2) : 공업(기계)7급 +1, 간호·보건7급 +1
- 동부공원녹지사업소(2) : 공업(기계)7급 +1, 보건7급 +1

<상계·재배치> : 3개 기관, 6명

- 상수도사업본부(2) : 임기제 공업(기계)7급 +1, 행정8급 △1 → 보건7급 +1
- 중부공원녹지사업소(2) : 행정8급 △2 → 공업(기계) +1, 보건7급 +1
- 서부공원녹지사업소(2) : 행정8급 △2 → 공업(기계) +1, 보건7급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이와 함께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3명을 증원하고(상계·재배치 1명 별도), 노후 교량의 선제적 성능개선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실에 2명을 증원하였음.

| < 안전 점검 인력 증원 내역 > |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인력보강 :+3명 | |
| ▶ (순증 3) 시설(토목)6급 +1, 시설(토목)7급 +1, 시설(건축)7급 +1 | |
| ▶ (상계·재배치 1 별도) 시설(건축)6급 1 | |
| ○ (안전총괄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인력보강 : +2명 | |
| ▶ (순증 2) 시설(토목)6급 +1, 시설(토목)7급 +1 |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속 사업장과 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공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은 강화된 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총괄관리팀 인력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증원은 타당함.
- 다만, 공사장 안전점검 인력은 담당 부서의 요청(16명)이 일부(4명)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량이 구체화되어 안전점검을 위한 인력 부족이 확인되면 자체 정원의 재배치와 즉각적인 증원을 통해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공사장 안전점검 인력 요청 현황과 미반영 사유>

| 부서명 | 직무 내용 | 요청 인원 | 반영 인원 | 미반영 인원 | 미반영 사유 (일부반영) |
|----------|-------------|-----------|----------|--------|--|
| 도시기반시설본부 | 발주 공사장 안전점검 | 1부 3과 16명 | 4 (일부반영)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현장 안전점검 횟수 확대 및 시기별·계절별 특별점검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과’ 現 점검 인력(10명)의 40% 증원반영 · 향후 업무량 구체화 및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 |

다. 민간위탁 사무의 직영화에 따른 증원(5급 이하 +8명)

-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서울로 7017’ 과 ‘서울숲’ 이 2022년 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각각 이관될 예정임.
-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본청 공원녹지정책과(서울로지원팀)에서 4명 정원을 이관받고, 4명을 증원해(재배치 4명 별도) 서울로관리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임.

< 인력 변동 내역 >

- 증 원(4) : 행정7급 1명, 녹지7급 1명, 토목7급 1명, 전기8급 1명
 - ▶ [행정7급] 사무 업무, 기간제지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 ▶ [녹지7급] 수목 병충해 관리 등 식물 및 녹지대 관리, 공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 [토목7급, 전기8급] 시설물(보행로 시설, 조명시설, EV, CCTV 등) 안전관리
- 재배치(4) : 녹지5급 1, 행정6급 1, 녹지6급 1, 방호7급 1
 - ▶ 정원(4명) 이관 : 공원녹지정책과(서울로지원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사업소 내 부서(서울숲공원지원과)를 재편해 4명을 재배치하고 정원 상계로 3명을 확보한 후 4명을 증원해 서울숲공원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임.

< 인력 변동 내역 >

- 증 원(4) : 녹지6급 1명, 행정7급 1명, 녹지7급 2명
 - ▶ [녹지6급 1명, 녹지7급 2명] 공원시설(곤충식물원, 내비정원, 생태숲, 육묘장 등) 운영 및 수목관리, 공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 [행정7급] 사무 업무, 기간제지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 정원상계(3)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장기결원 정원과 상계조치
 - ▶ 행정8급 △3 ⇒ 전기7급 +1, 건축7급 +1, 방호7급 +1
- 재배치(3) : 녹지5급 1, 녹지6급 1, 기계7급 1
 - ▶ 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3명 정원 재배치(→서울숲공원사무소)

- ‘서울로 7017’ 과 ‘서울숲’ 은 그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업무가 안착되었으나, 직영으로 전환되어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설 유지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서울로 7017’ 과 ‘서울숲’ 은 2021년 4월에 실시된 종합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세부항목인 시민만족도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로 7017과 서울숲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시설명 | 총점(100점) | 시민만족도 (10점) |
|----------|----------|-------------|
| 서울로 7017 | 84.46 | 9.31 |
| 서울숲 | 89.82 | 8.90 |

- 민간위탁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고 종합성과평가와 서비스 만족도 또한 우수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서울로 7017과 서울숲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시설명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 서울로 7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축제 : 서울로 스케치, 서울로 산책기록 · 서울로학교 : 보행, 예술, 생태 등 월별, 일상적 운영 · 보행로 특화 프로그램 : 전망대 버스킹 |
| 서울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숲학교 운영(유아숲체험, 가족생태나들이, 서울숲 셀프가드닝 등) · 시민 제안·협력 프로그램 운영 · 서울숲투어 운영 · 이벤트·문화 행사(그린피크닉, 서울숲가을페스티벌) |

- 한편, 서울시는 증원과 재배치를 통해 ‘서울로 7017’ 과 ‘서울숲’ 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나 당초 사업소 요청의 일부만 반영되었음.

<담당부서의 증원 요청 현황과 미반영 사유>

| 부서명 | 요청 인원 | 반영 인원 | 미반영 인원 | 미반영 사유 |
|------------|-------|------------------|--------|---|
| 총 계 | 19 | 11 | 8 | |
|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 7 | 4 (증원)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7급 1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건축직 2명 배치 중이고, 관리시설 규모 크지 않아 건축7급 증원 미반영 행정8급 1 : 결원 유지 중으로 현원 확보하여 인력 배치 가능하므로 증원 미반영 기계8급 1 : 결원 유지 중으로 현원 확보하여 인력 배치 가능하므로 증원 미반영 |
|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 12 | 7 (증원 4, 상계조정 3)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목8급 1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토목직 2명 배치 중이고, 관리시설 규모 크지 않아 토목8급 증원 미반영 녹지8급 2 : 결원 유지 중으로 현원 확보하여 인력 배치 가능하므로 증원 미반영 운전8급 1 : 결원 유지 중으로 현원 확보하여 인력 배치 가능하므로 증원 미반영 임기제 8급 1 : 관리동물(꽃사슴28마리 등) 종류 및 개체수 고려 시 전문성 요구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워 임기제 증원 미반영하고 공무원 배치 |

- 이로 인해 종전 민간위탁보다 인력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직영 전환 후 단순 시설관리에 머무르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의 질 유지에 차질을 보일 우려가 있음.

라. 기록관리 및 멸종위기종 생태연구 전문인력 증원(연구직 +2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20.10)으로 기록물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었고, 서울기록원에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유전자원 보전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류에 대한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10대 멸종위기종에서 조류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인력(2명)은 포유류와 양서파충류에 집중하고 있어 조류 연구가 소외되고 있음.
- 서울시 20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기록연구사 1명의 증원은 타당하고, 서울대공원의 조류 서식지 조사, 인공 번식 등 조류의 종보존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1명(농업 7급)의 증원 역시 현실성 있는 조치로 판단됨.
 - 서울대공원은 농업 7급 외에 임기제 농업 9급 1명을 수의연구사 1명으로 정원상계해 결과적으로 동물원 종보전연구실은 2명이 증원됨.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 김성만 | 02-2180-8055 |